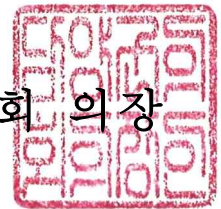


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9. 27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
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 등 6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

인용조문 수정(안 제1조)

나. 「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」 인용조문 수정
(안 제2조)

다. 「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인용조문 및
자구 수정(안 제3조)

라. 「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」 인용조문 및 제명, 자구 수정(안 제4조)

마. 「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인용조문 및
자구 수정(안 제5조)

바. 「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인용조문 및 자구
수정(안 제6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9. 27. ~ 10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
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2. 의견

관련조문

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3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0조”로 한다.

제2조(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)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“라 한다) 제35조”를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로, “담양군의회 (이하“의회“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상해”를 “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

무상 사망, 상해”로 한다.

제4조(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)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를 “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42조”를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1조”로, “(이하“의회“라 한다)또는”을 “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장,실·과·소장급”을 “국장, 실·과·소장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17조”를 “법 제131조”로 한다.

제5조(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)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와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제53조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44조”를 “법 제5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47조”를 “법 제56조”로, “위한”을 “따라”로, “임시회”를 “임시회 집회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
집회일과 법 제45조”를 “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,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제6조(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) 담양군의
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
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 및 같
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(이하“의회”라 한
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 (이
하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90조”를 “법 제102조”로, “법 제113조 내지
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”로,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를
“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
“법 제16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법 제104조”를 “법 제11
7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,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
조”로 한다.

제6조의2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, “제39조부터 제48조의 규

정을 각각”을 “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
규정을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3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“법 제42조”를 “법 제5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33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40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2조(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</u> 」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,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 「 <u>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
1. “정책개발연구활동”이란 담양 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략)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「지방자치 법」 제46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제3조(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“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 군의회 (이하“의회“라 한다)의원 의 직무상 사망,상해에 대한 보상 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 다) 제37조----- 담 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 원의 직무상 사망, 상해----- ----- -----.

제4조(담양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
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u>담양군의회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의(이하“의회“라 한다)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군수의 보조기관중 <u>국장,실·과·소장급</u> 3. <u>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</u>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(생략) 5. <u>법 제117조</u>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	<u>담양군의회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(<u>이하 “법”이라 한다</u>) 제51조----- -----(<u>이하 “의회”라 한다</u>) 또는 ----- -----. 제2조(범위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국장, 실·과·소장급</u> 3. <u>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131조</u>----- -

제5조(담양군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와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3조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	제2조(개최) ----- 법 제53조----- ----- -----.
제3조(회기)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90일 이내로 한다.	제3조(회기) 법 제56조----- 따라 ----- 임시회 집회-----.
제4조(집회)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	제4조(집회)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----- -----.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	제5조(심의) ① ----- 법 제150조----- -----.

을 심의·의결한다.	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1조</u>	② ----- <u>법 제49조</u> -----
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	----- <u>법 제</u>
사의 실시와 <u>법 제127조</u> 의 규정에	<u>142조</u> -----
의한 예산안의 의결및 기타 의회	-----.
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

제6조(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담양군의회 (이하“의회“라 한 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“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 (이하“조사“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담양군의회 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 (이하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
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법 제90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의 회사무과 및 <u>법 제113조 내지 제</u>	2. <u>법 제102조</u> ----- - <u>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</u> -----
<u>116조</u>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	-----

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

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

4.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

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의2(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) 법 제41조

-- 법 제131조 및 제134조----

3. ----- 법 제163조-----

4. 법 제117조 -----
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

① ----- 법 제13조-----
----- 법 제49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) 법 제49조
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
도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
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
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3
9조부터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
용한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
③ (생 략)

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
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
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
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
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 제5항의
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
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부과할 수 있다.
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
① · ② (생 략)

③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
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· 진술을
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
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
실비를 지급하되 담양군여비조례의
국내여비규정중 5급상당액에
의한다.

제9조의4(대리출석 · 답변의 통지)

----- 제41조
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
제53조까지의 규정을 -----
--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법 제49조 -----

-----.
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49조 -----

-----.

제9조의4(대리출석 · 답변의 통지)

① 군수는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① ----- 법 제51조 -----

-----.